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과의 신속한 상호공조 기능 강화를 통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필요한 인력 4명(경정 4명)을 증원하며, 증원되는 인력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소방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청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
제22조제3항 전단 중 “산림청”을 “산림청, 4명(경정 4명)은 경찰청”으로, “충원”을 “각각 충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림청장”을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74”를 “279”로 하고, 일반직 계 “38”을 “3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를 “33”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6 다음에 “경찰공무원 계 4”를 신설하며, 경찰공무원 계 4 다음에 “경정 이하 4”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10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11의3. (생 략)	1. ~ 11의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2. 청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 ·</u> <u>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 · 관</u> <u>리</u>
<u>12. (생 략)</u>	<u>13. (현행 제12호와 같음)</u>
제22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② (생 략)	제22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 중 4명(6급 4명)은 <u>산림청</u> 소 속 공무원으로 <u>충원</u> 해야 한다.	③ ----- ----- <u>산림청, 4명</u> <u>(경정 4명)은 경찰청</u> ----- ----- <u>각각 충원</u> -----.
이 경우 소방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u>산림청장</u> 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u>해당 기관</u> <u>의 장</u>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u>274</u>		<u>279</u>	+5	
·			·		·		
·			·		·		
일반직	계		<u>38</u>		<u>39</u>	+1	
3급	또는	4급 이하	<u>32</u>		<u>33</u>	+1	
·			·		·		
<u>경찰공무원</u>	계		<신 설>		<u>4</u>	+4	
<u>경정</u>	이하		<신 설>		<u>4</u>	+4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2